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[도일용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11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6.

발의의원 : 도일용 의원, 김보경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노후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안전관리 등 보수비용 지원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
- 나.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기준 추가(안 제19조제2항 신설)
- 나.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를 조항에 맞게 개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- 「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」 제22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“제15조제1항”을 “제1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5조제2항”을 “제1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17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제1항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생략)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.	제17조(보조금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제외한다.
제18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	제18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.
제19조(보조금 지원기준)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 〈신 설〉	제19조(보조금 지원기준)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단지별 세대수를 고려하여 최대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단지 중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경과연수에 따라 차등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
제20조(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20조(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군수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발 의 자 서 명 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도 일 용	조 실 용	
김 보 경	김 보 경	